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26년07월31일

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- 1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- 3 투자신탁 환매주기 단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투자신탁 명칭 변경	표지, 제2조 (용어의 정의),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,제49조의 2(투자신탁의 전환) 국문: 신한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 영문: SH US Security Feeder(H)[Equity]	표지, 제2조 (용어의 정의),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,제49조의 2(투자신탁의 전환) 국문: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 영문: SH US Core Active Security Feeder(H)[Equity]
2.모투자신탁 명칭 변경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④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,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④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,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3.투자신탁 환매주기 단축	제25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,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이하 생략>	제25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,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이하 현행과 같음>
3.투자신탁 환매주기 단축	제26조 (환매연기) ①~⑥<생략>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____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집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집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(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4영업일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	제26조 (환매연기) ①~⑥<현행과 같음>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____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집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집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(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3영업일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
3.투자신탁 환매주기 단축	제49조의 2(투자신탁의 전환) ①~③<생략> ④ 수익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____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1.~4.<생략> <신설> 5. 신한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, 신한유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-파생형], 신한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, 신한중국의꿈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, 신한중국의꿈증권자투자신탁제2호(H)[주식], 신한차이나오피티티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, 신한차이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-파생형]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(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)에 전환처리 합니다. 6.~7.<생략>	제49조의 2(투자신탁의 전환) ①~③<현행과 같음> ④ 수익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____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1.~4.<현행과 같음> 5.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전환처리 합니다. 6. <삭제>신한유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-파생형], 신한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, 신한중국의꿈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, 신한중국의꿈증권자투자신탁제2호(H)[주식], 신한차이나오피티티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, 신한차이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-파생형]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)에 전환처리 합니다. 7.~8.<현행과 같음>
3.투자신탁 환매주기 단축<계속>	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 1.~2.<생략> 3.제4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로 한다.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 1.~2.<생략> 3. 수익자가 제4항 제3호 내지 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로 한다.	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 1.~2.<현행과 같음> 3.제4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로 한다.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 1.~2.<현행과 같음> 3. 수익자가 제4항 제3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로 한다.

투자설명서 변경내역

- 1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- 3 투자신탁 환매주기 단축
-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- 5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
-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투자신탁 명칭 변경	문서 전반 신한미국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	문서 전반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
2.모투자신탁 명칭 변경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/라. 모자형 구조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/라. 모자형 구조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3.투자신탁 환매주기 단축	제2부.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라. 환매 (1) 수익증권의 환매 A.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(D+4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B. 17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(D+5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2)~(5)<생략>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__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 전일(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4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	제2부.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라. 환매 (1) 수익증권의 환매 A.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B. 17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(D+4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2)~(5)<연행과 같음>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__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(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3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
3.투자신탁 환매주기 단축	제2부.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마. 펀드 간 전환 (엠프렐러 클래스 펀드 간의 전환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<신설> 5) 신한미국증권투자신탁(H)[주식], 신한유로인덱스증권투자신탁(H)[주식-파생형], 신한중국본토증권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, 신한중국의공증권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, 신한중국의공증권투자신탁제2호(H)[주식], 신한차이나오퍼튜니티증권투자신탁(H)[주식], 신한차이나인덱스증권투자신탁(H)[주식-파생형]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(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)에 전환처리 합니다. 6)<생략> 7)<생략>	제2부.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마. 펀드 간 전환 (엠프렐러 클래스 펀드 간의 전환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5)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투자신탁(H)[주식]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전환처리 합니다. 6)<연행과 같음> 7) <삭제>신한유로인덱스증권투자신탁(H)[주식-파생형], 신한중국본토증권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, 신한중국의공증권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, 신한중국의공증권투자신탁제2호(H)[주식], 신한차이나오퍼튜니티증권투자신탁(H)[주식], 신한차이나인덱스증권투자신탁(H)[주식-파생형]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(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)에 전환처리 합니다. 8)<연행과 같음>
4.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-업데이트
5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	제3부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업데이트
6.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- 업데이트

-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- 1 투자신탁 명칭 변경

2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
3 투자신탁 환매주기 단축

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5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투자신탁 명칭 변경	문서 전반 신한미국증권투자신탁(H)[주식]	문서 전반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투자신탁(H)[주식]
2.모투자신탁 명칭 변경	투자목적 및 전략 (2)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투자목적 및 전략 (2)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3.투자신탁 환매주기 단축	환매 방법 가. 17시 이전: 제4영업일(D+3)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(D+4)에 지급 나. 17시 경과 후: 제5영업일(D+4)의 기준가격으로 제6영업일(D+5)에 지급	환매 방법 가. 17시 이전: 제3영업일(D+2)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(D+3)에 지급 나. 17시 경과 후: 제4영업일(D+3)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(D+4)에 지급
4.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-업데이트
5.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	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- 업데이트